

---

『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』  
2026년 해외 아이웨어 시장조사  
용역 과업지시서

---

2026. 3.

담당자	부 서 명	성 명	전 화 번 호	이 메 일
	전략연구팀	문소영	053-350-7854	msy@koia.or.kr

# 목 차

I. 용역개요 .....	1
1. 용역개요 .....	1
2. 추진일정 .....	1
II. 과업내용 .....	2
1. 시장조사 .....	2
2. 국가별 K-아이웨어 수출전략 제언 .....	2
3. 기타사항 .....	3
III. 과업관리 .....	3
IV. 과업수행지침 .....	5

# 용역개요

## 1. 용역개요

- 용역명 : 2026년 해외 아이웨어 시장조사 용역
  -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. 12. 4.(금)까지
    - ※ 과업 성과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가간은 용역기간 종료 후 3개월 정도 진행 예정
  - 기초금액 : 금53,976,000원(금오천삼백구십칠만육천원) / 부가세포함
  - 용역목적
    - 가. 해외 안경산업 및 현지 K-아이웨어 동향 파악을 위함
    - 나. 글로벌 수출 제고를 위한 글로벌 데이터 확보
  - 용역범위
    - 가. (시장조사) 해외 아이웨어시장 및 K-brand 안경관련 조사·분석 5개국 정도
      - 품목 : 안경테, 선글라스, 콘택트렌즈
      - 시장규모(평균가격 등), 수출·입 추이, 현지 유통현황(취급형태, 판매 형태 등), K-아이웨어 관련 특이점, 소비재 브랜드 수출성공사례 등
    - 나. (수출전략 제언) 시장조사 등을 통해 국가별 K-아이웨어 수출전략 제언
      - K-아이웨어 진출을 위한 수출전략 및 관련 규정 안내 등
- ※ 발주처 내부 사정에 따라 세부 과업내용 및 수행/조사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

## 2. 추진일정(안)

입찰공고	:	과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	'26. 3~4월
↓			
수행처 선정 / 착수보고회	:	평가위원회 결과 바탕 계약체결 /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	'26. 4월
↓			
과업 추진	:	과업 추진 및 수시보고	'26. 4월 ~ 11월
↓			
최종 보고회	:	과업 최종 보고회 및 보완사항 점검	'26. 11월
↓			
과업 종료	:	최종 결과물 제출 및 사후관리	'26. 12월

※ 발주처 내부 사정에 따라 과업 추진 일정 및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

### 1. 시장조사

○ 국가선정

- 5개국 정도 조사 예정

※ 용역사 측에서 K-아이웨어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(및 사유)를 사전 제시 후, 협의를 통해 조사 국가 확정할 예정이므로. 조사내용 및 국가시장규모 등에 의해 국가 수는 변동될 수 있음

[참고] 수출상담회 개최국 후보(안)

업계 수요				수출 현황				
연번	구분	국가	기업수	연번	구분	국가	수출액 (천달러)	평균 성장률
1	미주	미국	211	1	아시아	중국	20,237	△40%
2	아시아	태국	137	2	아시아	일본	17,996	1005%
3	아시아	베트남	131	3	미주	미국	12,989	10%
4	아시아	일본	124	4	아시아	싱가포르	3,967	34%
5	유럽	프랑스	112	5	아시아	홍콩	3,906	17%

※ '23-'25년 수혜기업 수요 기준  
(중복선택 포함 총1,854개사)

※ '21-'25년 선글라스 수출 기준

○ 국가별 아이웨어 시장 조사

- 품목 : 안경테, 선글라스, 콘택트렌즈

- 시장규모(규모, 평균가격 등), 수출·입 추이, 현지 유통현황(품목별 취급형태, 판매형태, 주요 유통망), 한류 및 K-아이웨어 관련 특이점, 국가별 소비재 브랜드 수출성공사례 등

· 국가별 취급형태(공산품, 의료기기 등), 판매형태(B2B/C), K-아이웨어 관련 특이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 현지 조사원(발주처 네트워크 또는 KOTRA 등) 적극 활용 필요

### 2. 국가별 K-아이웨어 수출전략 제언

○ 국가별 수출전략 제언

- 국가별 소득수준 차이, 내부 문화, 한류 영향, K-브랜드 성공사례 등을 고려한 K-아이웨어 수출 전략 제언

- 국가별(및 품목별) 수출·현지 판매 절차와 관련 법령·규제 등 안내

- K-아이웨어에 관심있는 해외 바이어 및 유통망 발굴
  - 국가별 품목별 취급형태 및 판매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형 유통망 (바이어 또는 리테일러 등) 발굴, 리스트 정리
  - 발굴 기업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하며, 국가별 유효 유통망 기업 최소 30개사 이상 발굴
  - 과업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발굴 기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연계지원
    - ※ 비즈니스 연계지원은 진흥원(또는 안경기업)을 대상으로 온라인 미팅을 기본으로 하며, 필요시 번역·통역 지원

### 3. 기타사항

-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필수
  - 보고서는 한글오피스(hwp)파일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,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
  - 조사국 전체 요약본, 국가별 요약본 등 구분 필요
- 그 외 과업의 결과물 제고를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등

## III 과업관리

### 1. 수행조직

- 본 사업을 추진할 인력 구성에 대한 상세이력을 제시하여야 함
- 추진 인원의 업무역할을 기술하고, 본 과제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
- 각 사업 진행을 위한 조사 및 분석, 전략방향 수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관 내부 인력중심으로 배치
  - 외부 인력 참여시 참여율 및 참여 동의서를 별도 제출하되 자문위원은 제외함

### 2. 일정계획

-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
-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흥원에서 보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협의를 통해 진행가능 함(착수, 수시, 최종보고)
  - 보고회 진행 시,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재 제출해야 함

### 3. 사업관리

-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
-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진흥원과 상시로 협의 하여야 함

### 4. 보고 및 협의

- 본 사업 추진 중 변동사항이나 상시 보고계획은 수시로 하도록 함
-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(정기, 수시), 회의 계획을 과업별 일정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
- 보고사항

구분		보고시기	내용
정기보고	착수보고회	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	· 착수보고서 발표 및 자료 제출
	완료보고회	11월 중	· 완료보고서(보고서 및 PPT 형태)
수시보고	상시보고	월별(또는 주별)	· 주요 이슈사항 및 처리결과 등
	기타	이슈사항 발생 즉시	·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※ 보고회는 대면형태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나,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율 가능

#### ○ 과업성과품

구분	최종산출물	형태	수량	내용
완료보고서	① 발표자료 ② 완료보고서 ③ 시장조사서	제본 (컬러, 무선제본)	3	① 완료보고회 PT 자료 · 과업 추진 개요 및 결과 요약 ② 완료보고서 · 과업에 대한 완료보고서 (과업 개요, 추진절차 등) ③ 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· 시장조사 전체 요약본 · 국가별 요약본 및 전체 보고서
		파일(외장하드)	1	
정산보고서	정산보고서	제본 (흑백, 무선제본)	1	· 세부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증빙 필수
		파일(외장하드)	1	

※ 수량 등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율 가능

### 5. 결과보고

- 용역수행 중 주요 결정사항은 한국안광화학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.
- 용역수행 중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.
- 진흥원으로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담당자의 최종 검토 후 제출해야하며, 보완 요청 시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재 제출한다.

## 1. 사업수행 일반지침

-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보완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
-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,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함
- 발주기관은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, 발주기관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용역결과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정·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## 2. 보안 관련 사항
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, 과업 진행 시 발생한 중간생산물 및 모든 과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및 통신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·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
-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그 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
- 과업수행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·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

### 3. 저작권 관련사항

-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 및 자료는 발주처의 소유로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는 외부 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일체의 피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.

### 4. 분쟁의 해결

-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,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,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
-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
-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,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

### 5. 계약의 해지

-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  - 가.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
  - 나.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
  - 다.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
  - 라.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는 경우
- ※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,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용역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
### 6. 계약금 지급

- 사업비 지급방식은 계약 시 협상을 통하여 추후 결정한다.
-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, 수행사의 청구에 의한 일괄 지급이 원칙이다. 단, 선금 및 지급방식은 협상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.
- 과업이 일부 조정되거나 축소되는 경우, 최종 계약 시 포함된 세부 산출내역서에 의거하여 정산한다.

### 7. 기타

- 용역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,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,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